

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

제 호

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(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(신축주택·미분양주택·신축오피스텔 및 미분양오피스텔)

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2(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(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 오피스텔)

임을 확인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담당자:

)

(연락처:

)

년 월 일